

●新春特輯企劃●

中共에서도 特許法을 世界知的 所有權機構(WIPO)加入

中共에서도 特許法을 實施한다.

中共은 지난해 3月 12日 第6次 全國人民代表大會常任委員會에서 特許法을 採擇하고 금년 4月 1일부터 實施하기로 했다.

中共이 特許法을 採擇, 實施하는 것은 發明 및 著作에 대한 權利를 特許權으로 保護育成함으로써 科學技術發展을 도모하여 社會主義 現代化에 副應하기 위한 것.

中共은 또 지난해 12月 19日에 世界知的所有權機構에 加入, 外國人에게도 特許出

願의 門戶를 開放했다. 이로서 外國人도 北京의 專利대리처와 上海專利사무소 그리고 홍콩의 中國專利대리유한공사를 경유하면 中共에 特許 出願이 可能하게 되었다.

中共의 特許法 實施에 가장 敏感한 反應을 보인것은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工業先進國들. 이는 工業所有權 制度가 國際性이 있기 때문.

그러나 우리나라로 關心이 대단하다. 아

中共特許法의 基本性格

中共特許法은 8章 69節로 構成되었다. 1章은 總則, 2章 特許權 獲得條件, 3章 特許의 申請, 4章 特許申請의 審查 및 承認, 5章 特許權의 持續, 중단 및 無効化, 6章 特許權 使用에 있어서의 義務的 라이선스, 7章 特許權의 保護, 8章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關係者들로부터 많은 支援을 받았다.

中共特許法은 中共國民과 外國人の 權利를 平等하게 保護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서방국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같은 社會主義國家인 소련에서는 獨占的인 實施權을 國家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基本的으로 그 性格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또 發明特許에 대해서 審查 公開 公告(審查主義)를 채택하고 있지만 實用新案은 公告 후 異議

申請에 관해서만 實體審查를 하는 無審查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그점이 우리나라 제도와 다르다.

中共의 實用新案制度는 方法(製造)등 特許가 포함되어 있어 發明特許와 實用新案制度 모두가 그 發明의 현저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特許權의 존속기간은 特許의 경우 우리나라가 公告日로부터 12年, 出願日로부터 15年(日本이 公告日로부터 15年)과 비슷한 出願日로부터 15년이며, 實用新案은 우리나라가 公告日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12년인데 비해 中共은 출원일로부터 5年으로 짧지만 3년의 연장이 인정되고 있다(日本은 公告日로부터 10년).

또 中共의 特許法 중 審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日本, 西獨등과 같이 審查請求制度를 채택하고 있고 出願日로부터 18개월후에 公開한다.

또 中共特許廳은 化學物質, 의 약품, 原子力關係의 發明이 不特許事由로 規定되어 있다.

實施한다

外國人도出願可能

직 외교관계는 없지만 最近 中共의 태도로 보아 經濟外交의 길은 열리지 않겠느냐하는 期待 때문이다.

아들은 竹의 帳幕에 가려있던 中共의 特許法 實施 및 出願 門戶開放은 엄청난 變化이다.

그 엄청난 變化를 물고온 特許法의 內容은 무엇인가. 外誌報道를 中心으로 추적해 보았다.

編 輯 者 註

出願은 이렇게

發明 및 實用新案을 出願할 때는 原書, 明細書, 明細書의 項과 權利要求書를 提出해야 한다(제 26조).

原書에는 發明 또는 實用新案의 명칭, 住所 등을 記入해야 한다.

明細書에는 發明 및 實用新案에 대해서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圖面을 첨부해야 하며, 그 技術分野의 技術者가 實施할 수 있도록 完全한 說明이 되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發明者證制度에서 發明者는 노하우를 포함해서 그 發明을 實施하려는 者가 있으면 技術指導를 할 義務가 있다. 따라서 明細書에는 그 技術內容을 모두 쓸 必要는 없다.

한편 美國形의 明細書는 實物을 提出하는 대

신 상세한 도면과 해설을 요구한다.

어느정도의 상세한 說明을 要求하는 지에 대해서는 出願人에게는 관심거리인데 中共特許局(專利局)은 보통의 技術者가 實施할 정도로 되어 있다.

적요에는 發明 및 實用新案의 技術的 要點을 간략하게 說明하면 된다.

權利要求書는 明細書를 근거로 保護範圍를 記載해야 한다.

意匠出願의 경우에는 原書 및 意匠을 나타내는 圖面과 사진을 提出해야 한다. 이때 意匠에 관계되는 物品과 그에 속하는 類別을 記載해야 한다(제 27조).

中共特許法(中共에서는 專利法이라 불리어침)은 先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지만(제 9조) 先後願의 判斷은 날짜로 하며 시각의 先後는 고려되지 않는다.

出願日은 特許局이 特許出願을 접수한 날이 된다(제 28조).

따라서 代理處에서 번역이 늦어지면 出願日이 늦어지게 된다.

代理處에서는 出願의뢰시 日語등도 可能하나 번역자를 英語를 中心으로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英語로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外國人은 代理事務所 통해야

中共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外國인이 出願할 때에는 國務院이 指定한 特許代理機關을 통해 出願해야 한다.

代理事務所는 北京의 「專利代理處」, 上海「專利事務所」, 홍콩의 「中共專利代理有限公司」 등 3곳이 있는데 外國人은 이들 3곳 어느곳을 통해 出願할 수 있다.

代理事務所는 각己 獨立된 機關으로 경합관계에 있다.

社會主義國家에서는 특이한 일이며, 서비스向上이 期待된다.

또 홍콩의 「代理有限公司」는 自由主義 世界와 비슷하게 서비스면에서 열의가 있고, 어느나라 言語도 번역이 可能하며, 팩스밀리에 의한 사전의뢰도 可能하다.

그리고 事務所는 쌍방 대리는 不可能하다. 이는 의뢰인과의 信用關係 때문으로 分析되고 있다. 의뢰인은 代理事務所를 自由롭게 선택하고 종도에 变경도 할 수 있다.

그리고 出願에 必要한 内容만 보내면 거의 代理處에서 作成하도록 되어 있다.

또 中共은 全人代 常務委員會에서 올해 파리 협약에 加盟할 것을 결정한 바 있어 代理事務所로부터 北京의 特許局에 出願되기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時間때문에 의뢰인에 不利益이 될 염려는 없다.

즉 到達主義가 아니고 出願인이 出願書類를 發送한 날짜를 基準으로 發明의 新規性을 判斷하도록 되어 있다.

優先權은 6個月 認定

파리協約에 우선권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 中共은 外國人에게 우선권 기간을 1년으로 認定해 줄 경우에 中共인이 혐자하게 不利하다는 理由로 그 기간을 6個月로 定했다.

이 점은 WIPO의 복시 事務總長과도 타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련이 파리協約 加盟時 1년으로 했다는 점을 들어 다른 國家에서 반기를 들자 中共關係者는 中共은 소련과 달라서 즉 中共은 지금 特許法을 制定하므로 파리協約 加盟時 이미 特許法이 있었던 소련과 같이 취급되어 서는 안된다고 主張했다.

出願인이 우선권을 主張하고자 할 때는 出願時에 그 要旨를 표시하고 外國에서의 出願日, 出願國을 記入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이내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를 提出해야 한다(제30조).

中共法은 1發明 1出願 또는 1意匠 1出願의 原則例外로서 하나의 全般的 발명구상에 속하는 그 이상의 發明 또는 實用新案 및 같은 類에 속하는 事項을 각각 1조로 해서 使用되는 物品에 使用되는 이상의 發明 또는 意匠은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新規性 상실의例外로서 中共政府가 주催

하여 承認을 얻은 國제전람회의 출품, 規定된 學術會議, 技術會議에서 發表됐거나 出願人의 사에 따라 그 内容이 公開된 경우에는 6개월의 우선권이 認定되지만(제24조) 그 우선권도 出願時에 主張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特許法이 施行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에 自國에 出願된 것도 우선권이 認定되어 代理事務所에는 이미 出願의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強制實施權 制度

中共法은 無審查의 實用新案制度가 있는데 이制度는 外國人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中共人の 發明장려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처럼 特許와 實用新案制度間의 出願變更도 原則적으로 認定되지 않으며, 外國인의 出願을 받는 목적은 中共의 科學技術振興에 표본이 되는 技術을 出願 받았으면 하는 것이 中共當局의 立場이라고 關係者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基礎的인 技術에 해당되는 實用新案制度의 權利를 친홍시키고 強制實施權制度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생물 보호

미생물에 관한 發明은 우리나라와 같이 종균을 寄託함으로써 特許를 받게 되어 있다.

상세한 수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施行細則에 명확히 規定할 예정이지만 寄託機關은 中共科學院미생물연구소와 위생부 생물제품 감정소가 있다.

中共은 미생물의 寄託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에도 加入할 예정으로 있어 先進國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商標에 대하여

中共은 우리나라, 日本등과 같이 類似의 商標를 認定하지도 않고, 또 이를 保護하는 制度도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有名한 商標를 保護하기 위해서는 유사의 商標를 모두 出願하도록 中共은 권장하고 있다.

또 자기의 登錄商標를 使用하지 않고 變更한 商標를 사용하면 登錄된 商標자체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

그려나 中共은 홍콩 「專利代理有限公司」가 發刊하는 機關紙에 公告하는 것만으로 商標의 使用을 認定할 方針으로 있어 中共과 貿易이 없어도 不使用에 의한 取消를 당할 염려가 없으며 장래에 中共市場을 겨냥하고 있을 때 商標戰略에 좋은 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發明의 審查 및 登錄

中共의 出願에서 登錄까지의 수속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出願은 우선 方式審查가 행해지고 方式이 不備하면 補正指示를 한다. 補正指示에 대한 應答이 없으면 出願이 取下된다. 또 應答을 했더라도 不備하면 出願은 無効處分을 받을 경우가 생긴다.

그후 出願된 内容이 나라의 安全 또는 重大한 利益에 관해 秘密을 要하거나(제4조), 不特許事由(제25조)에 해당되는지를 審查한다. 그후 不特許事由에 해당되지 않으면 IPC分類가 부여되고 出願에서부터 18개월 만에 公開된다.

實體審查는 審查請求에 의해서 행해지며 請求는 出願日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期間内에 審查請求가 없으면 出願이 取下된 것으로 본다(제35조).

審查請求期間은 日本의 7년, 우리나라의 5년에 비해 짧은 이유는 公開되어진 出願이 審查請求 해당여부의 不明確으로 방치된期間이 길어지면 開發途上國으로서는 不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原則적으로 第3者에 의한 審查請求가 認定되지 않지만 그대신 特許局이 必要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審查請求가 없어도 獨자적으로 審查할 수 있다.

審查請求時 出願人은 出願前 그 發明과 關係되는 參考資料를 提出해야 한다.

특히 다른 外國에 出願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서치 리포트 또는 拒絕理由等에 인용된 資料는 반드시 提出해야 하고 正當한 理由없이 提出 않은 경우는 出願이 取下된 것으로 認定되기 때문에 (제36조), EPC에 出願한 것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

特許要件이 充足되어 拒絕理由를 發見할 수 없을 경우에는 特許查定이 되며, 出願人에서 通知됨과 同時に 公告된다(제39조).

公告期間은 3個月이고 그동안에 누구도 異議를申請할 수 있다.

答辯書 提出期間은 3개월이고 正當한 理由없이 答辯書를 提出하지 않으면 出願이 取下된 것으로 본다(제41조).

異議申請이 없든가 異議不成立의 경우 特許局은 特許權부여를 결정하고 特許證交付, 必要한 事項을 登錄하며, 目錄을 公告한다(제44조).

拒絕에 대한不服申請은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特許復審委員會에 내야 하며 特許復審委員會의 請求 기각 결정에 대해서 通知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人民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제43조).

實用新案·意匠의 審查, 登錄

이상은 發明에 대한 審查手續이지만 이에 비해 實用新案과 意匠의 審查手段은 간단하다.

中共에서는 새로운 特許制度를 導入하기 때문에 保護對象을 넓히지 않고 特許하나에만 우선 經驗을 쌓고 制度가 성숙한 단계에 實用新案, 意匠의 保護에 대한 檢討를 해야 한다는 論議가 있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美國도 實用新案法을 갖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發明이 登錄되어져 종종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實用新案制度를 두지 않는 대신 小發明과 大發明은 거의 비슷하게 保護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은 發明과 實用新案을 分離해서 그 수속과 保護를 간단히 하는 편이 부담이 경

감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實用新案과 意匠에 대해서는 出願을 수리한 후 초보심사에 의해 特許法에 定한 要件을 充足하고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實體審查를 하지 않고 즉시 公告하여 각 出願人에게 通知한다(제40조).

이 公告는 發明의 出願公告와 같으며 第3者에 의한 異議申請의 機會를 주는 것도 같다.

그후의 審查手續은 發明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實用·意匠에 대한 出願公開, 審查請求制度, 實體審查가 행해지는 것은 異議申請이 있었던 것에 한한다.

또 不服申請도 特許復審委員會에 대한 것만 있고 復審委員會의 決定은 最終審인 人民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제43조).

無効審判

特許權이 부여된 후 그 權利가 特許法의 規定을 만족시키지 않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누구나 特許復審委員會에 그 特許權 無効宣言을 할 수 있도록 異議申請이 可能하다.

中共法은 無効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제48조).

特許復審委員會는 特許權 無効宣言을 양당사자에게 通知함과 同時に 이 事實을 登錄하고 公告한다.

이 委員會의 決定에 不服이 있을 때는 發明特許權에 대해서만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내에 人民法院에 提訴해야 한다.

그러나 實用新案·意匠에 대해서는 特許復審委員會의 決定이 最終審이 된다(제49조).

無効가 宣言된 特許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最近「特許法 실시세칙」도 규정

中共特許局은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이나 기술 개발을 한 개인에게 상당액의 보수를 출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中國特許法실시세칙」을 최근 발표했다.

日本의 共同통신에 따르면 이 세칙에서는 특허권을 가진 조직(또는 기업)은 이 특허권을 통해 얻은 이윤(납세 이후)의 0.5~2.0%를 매년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을 가진 조직은 다른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특허에 의한 특수기술 사용을 허가해 출 수 있지만 이때 취득한 사용료(납세 후 금액)중 5~10%를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이 세칙에는 규정돼 있다.

그런데 中共은 84년 3월 全人代(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新特許法을 채택하고 84년 11월 「工所權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가입을 결정했었다.

이번에 발표된 실시세칙은 전문 10장 96조로 구성됐으며 특허신청과 특허심사 및 비준, 발명 자장려 등의 사항을 규정, 特許法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案) ————— (內)

第14回 發明教室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們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通한 發明意欲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4月中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一. 日 時 : 1985年 4月 13日(土) 午後 1시
- 一. 場 所 : 特許廳 研修室 (參加費 없음)
- 一. 문의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557-1077/8)